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2003. 12. 31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결정사항(안 제3조) : 법령폐지 및 여건변화에 따라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회의(안 제4조)
 - 회의소집 사전통보 일자 변경 : “회의개최 전일까지”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안 제4조제2항)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을 삭제(안 제4조제3항)
 - 회의 및 회의록 공개원칙(안 제4조제5항)

3. 검토의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본 조례 중 개정안은 2003. 12. 31 폐지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의 당초 취지를 본 조례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동조 제2항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소집권과 의사정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본 조례 제3조제12호 및 제15조가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현 직제 명칭에 부합토록 개정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23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규정형식상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있거나, 그 동안 법령의 개폐 및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없어졌거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목 및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그 동안 심의안건이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호 중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을 “기타 구청장이 제출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의 규정형식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 4.(생략) 5. <u>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u>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결정사항) -----. 1. - 4.(현행과 같음) 5. <u>기타 구청장이 제출한</u> ----- -----

안 제4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4조는 폐지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와 제6조의 취지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위원회의 회의소집권과 회의소집요구권에 관한 사항(동조 제1항)과 안건의 서면통지 기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동조 제3항),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동조 제5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소집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1항에서는 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개의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제 권한을 행사하는 일반적 임법례에 비추어보아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위원회의 회의소집권은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개 정 안	수정의견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u>구청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4조(회의) ①----- <u>위원장</u> ----- -----.